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19
----------	-------

발의연월일 : 2025. 11. 5.

발 의 자 : 정춘생 · 김동아 · 김한규
맹성규 · 장철민 · 박민규
손명수 · 김남희 · 박성준
김영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재산세제 개편으로 현행 법령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시험장 토지는 시험·연구·검사용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2005년 이후 생긴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는 입법불비로 인해 여전히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실정임.

현재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남아있는 자동차주행시험장의 경우 자율차용 주행로봇시스템 등 구축, 톨게이트, 회전교차로 등 반복·재현 시험환경 제공, 전자파 장애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을 고도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소외되기 쉬운 부품 중소기업들에게

기초 연구·실증·양산 연결 단계를 지원하고, 개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비용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중소·중견 부품업체도 세계적 수준의 검증 과정을 거쳐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의 집약체로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만큼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인 만큼 자동차의 시험·연구용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시험·연구의 용도로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세 과세대상 구분을 차별없이 동일(별도합산과세대상)하게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중 “시험·연구·검사용 토지”를 “시험·연구·검사용 토지(「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연구·검사용 자동차 주행시험장 토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 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 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 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 지 가. (생략)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u>시험·연구·검사용 토지</u> , 물류단지시설용 토 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 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 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 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 다. (생략) 3. (생략) ②·③ (생략)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u>시험·연구·검사용 토지(「자동차관리법」 제 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부 품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연구 ·검사용 자동차 주행시험 장 토지를 포함한다)</u>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